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9. 12 선고 2022가단11660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4. 7. 5 선고 2023나2045775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9. 12 선고 2022가단116600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강남, 담당변호사 김진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은정, 도기영

변론종결 2023. 6. 20.

판결선고 2023. 9. 12.

주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2. 3. 3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
나. 피고는 소외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. 4. 1.접수

제481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C은 2019. 12. 3.부터 2021. 4. 14.까지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, C은 2021. 4. 22. 원고에게 발행인을 C,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액면금 1,000,000,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·교부하였고,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21년 제34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.

나. C이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, 원고는 2022. 2. 14.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,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2. 2. 15.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.

다. C은 2022. 3. 14.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권의 상환계획표(갑 제10호증)를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를 요청하였고,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경매취하서를 작성해주자 C은 원고에게 100,000,000원을 변제하였고, 원고가 다시 위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기입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C은 2022. 3. 23. 원고에게 100,000,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.

라. C은 2022. 3. 31.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(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)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4. 1. 접수 제48173호로 피고 앞으로
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마.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위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1),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C으로 하여 2016. 5. 13.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으로 된 채권최고액 300,000,000원의, 2020. 9. 17.

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로 된 채권최고액 364,000,000원의, 2022. 3. 23.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로 된 채권최고액 260,000,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성북구청장, 국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, 변론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부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당시 이미 성립된 채권이어서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, ① C은 2021. 4. 22.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까지 받아 교부한 점, ② C이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기초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까지 한 점, ③ C은 강제집행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2022. 3. 14. 원고에게 상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, 그 내용은 ‘2022. 3. 14. 경매취하서 작성 후 100,000,000원, 등기부등본 상 경매취하 완료 후 일주일 이내로 200,000,000원, 2022. 5. 15. 200,000,000원, 2022. 6. 15.까지 매월 100,000,000원씩 지급하고, 이자는 2022. 4.부터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상 지급한다’는 것이고, C은 위 상환계획표의 내용대로 원고에게 그 경매취하서 작성일인 2022. 3. 14.에 100,000,000원을 변제하였고,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된 2022. 3. 17.부터 약 1주일이 지난 2022. 3. 23. 다시 100,000,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을 종합해 보면 C은 원고에게 1,000,000,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 중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

800,000,000원(= 1,000,000,000원 - 200,000,000원)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.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1) C의 채무초과 여부

가)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소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350,000,000원, 소외 G에 대하여 200,000,000원 등 합계 550,000,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,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, C이 채무초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나)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은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(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), 갑 제13,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, 피고가 주장하는 C의 주식회사 F에 대한 350,000,000원의 대여금채권은 채권자 소외 K, 채무자 L, 보증인 주식회사 M 사이의 대여금 약정에 기한 것으로 위 회사는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, 피고가 주장하는 C의 소외 G에 대한 200,000,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G이 그 채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대여금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 있는 채권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가사 위 각 대여금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, 그 합계액은 550,000,000원에 불과한바, C에게는 앞서 본 원고에 대한 800,000,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 이외에도 제1. 마.와 같이 3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(채권최고액 총 924,000,000원)가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.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

가)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

것이고,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바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), 이 사건 증여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,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C의 이 사건 증여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그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나) 이에 대하여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C의 명의로 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피고와 C이 혼인생활에서 형성한 재산이어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부동산의 1/2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인바, 피고와 C이 협의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의 일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는 정당한 재산분할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C과 피고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노진영

[별지]

목 록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 동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성북구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래브지붕 18층 아파트
지하1층 1176.00㎡

1층 1262.64㎡

2층 1213.80㎡

3층 1206.24㎡

4층 1206.24㎡

5층 1206.24㎡

6층 1206.24㎡

7층 1206.24㎡

8층 1206.24㎡

9층 1206.24㎡

10층 1206.24㎡

11층 1206.24㎡

12층 1206.24㎡

13층 1206.24㎡

14층 1206.24㎡

15층 1206.24㎡

16층 1206.24㎡

17층 1206.24㎡

18층 1206.24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 180604.3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 벽식조

면 적 : 132.96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종류 :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 : 180604.3분의 53.01 . 끝.

1) 피고는 이외에도 적극재산으로 소외 주식회사 F에게 350,000,000원, 소외 G에게 200,000,000원의 각 대여금 채권 합계 550,000,000원의 채권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나,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